

## 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1. 전국의 해양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김광수\*

\*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A Study on Reported Status and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 1. On the Basis of Nationwide Status of Marine Facilities

Kwang-Soo Kim\*

\* Divis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30-729, Korea

**요 약 :**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서·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의 해상 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정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제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해양시설,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관리방안, 신고제도

**Abstract :** Present state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in Korea for two years 2008 and 2009 was analyzed, and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of the end of 2009, total number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was reported to be 672 and to be scattered along the coasts all over the nation. 124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a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occupied 18.5% of total nationwide number.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okpo regional office and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Pohang regional office occupied 10.3%, respectively. 181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Busan and Masan regional offices occupied 26.9%, meaning that about a quarter of total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concentrated in Southeastern Sea of Korea centering around Busan and Masan. 320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occupied 47.6% of total nationwide number. 11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6%. 178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occupied 26.5%. 7 cargo handling facilities occupied 1.0%. 12 waste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8%. none of marine facilities for tourism, housing and restaurant were reported. 88 water intake and outlet facilities occupied 13.1%. 37 fishing spots at play occupied 5.5%. 13 other marine facilities occupied 1.9%. 6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occupied 0.9% of total nationwide number. The guidance and the public relation for national report system of marine facilities,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port system and management plan, the advancement and complement of national report affairs-handling guides,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report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owners of marine facilities were proposed for better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Key Words :** Marine facilities, MLTM,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Management plan, National report system

\* 종신회원, kgs@mmu.ac.kr, 061-240-7165

## 1. 서 론

바다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원의 보고로서 개척의 대상이자 보전의 대상이다. 인간은 바다를 이용하는 데에만 물두하고 해양의 보전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바다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오염물질이 바다 현장의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또는 도시, 공단 등 육지로부터 직접 해양에 유입되기도 하고 강이나 대기를 경유하여 해양에 유입되기도 하는데, 바다의 자정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공단, 선박, 해양시설 등 오염원으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김, 2009a).

국내에서는 약 30년간 시행되었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하나가 해양시설 신고제도이다.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해양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게 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김, 2009b). 이런 의무 사항으로는 해양시설의 신고(법 제33조), 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법 제34조), 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법 제35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법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법 제121조)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제4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9호).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인력개발원)에서 각각 시행되던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 업무가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2011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것이다(김, 2009c).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교육대상자(수요자)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해양시설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해양환경관리공단, 2008).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해양시설에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35조). 해양경찰청도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수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켈리포니아 연안과 샌프란시스코 만에 설치된 해양기름터미널이 61개소로 보고되는 등(CSLC, 2010) 해양선진국에서는 해양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해양시설에 관한 조사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및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해양시설 신고실적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해양시설의 전국적 현황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시설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실시하는 해양환경

관리공단 등의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방법

### 2.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08년과 2009년 2년간 국내의 해양시설 소유자들이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해당 시설을 신고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별 연도별 상·하반기 신고 실적을 집계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국의 해양시설 신고 실적을 지방해양항만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리·분석하였다.

연구의 편의상,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제주청으로 표현하고 전국의 11개 지방청을 12개로 분류하였다.

### 2.2 해양시설의 구분 및 종류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제17호), 여기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해양시설은 3가지 시설(또는 구조물)로 제1호의 시설, 제2호의 시설, 제3호의 시설로 구분하였다(Table 1).

(1)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은 5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④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제1호가목의 시설)을 1-Ga의 약호로, ④ 오염물질저장시설(제1호나목의 시설)을 1-Na의 약호로, ④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제1호다목의 시설)을 1-Da의 약호로, ④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을 1-Ra의 약호로, ④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제1호마목의 시설)을 1-Ma의 약호로 표시하였다.

(2) [별표 1] 제2호의 해양시설은 4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④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제2호가목의 시설)을 2-Ga의 약호로, ④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제2호나목의 시설)을 2-Na의 약호로, ④ 유어장(제2호다목의 시설)을 2-Da의 약호로, ④ 그밖의 시설(제2호라목의 시설)을 2-Ra의 약호로 표시하였다.

(3) [별표 1] 제3호의 해양시설은 1가지 종류로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제3호의 시설)이며 3-Ga의 약호로 표시하였다.

### 2.3 해양시설의 범위

[별표 1]에 명시된 해양시설의 종류별 시설(Table 1)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1-Ga)의 범위에는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 처리시설이 포함된다.

(2) 해역관리청의 오염물질저장시설(1-Na)의 범위에는 저장

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이 포함된다.

(3)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1-Da)의 범위에는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4)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1-Ra)의 범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

(5)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1-Ma)의 범위에는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이 포함된다.

(6)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의 범위에는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2-Ga)이 포함된다.

(7)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2-Na)의 범위에는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8) 유어장(2-Da)의 범위에는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가 포함된다.

(9) 그 밖의 시설(2-Ra)의 범위에는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이 포함된다.

(10)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3-Ga)의 범위에는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 시설이 포함된다.

Table 1. Classification and type of marine facilities i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Classification	Type	Abbr.
1. Facilities or structures installed or placed in sea area or in a row in waters between sea area and shore for the purposes of supply, treatment and storage of oil, noxious liquid substances, wastes and other things (including facilities or structures linking temporarily to sea area)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1-Ga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1-Na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1-Da
	Cargo handling facilities	1-Ra
	Waste storage facilities	1-Ma
2. Facilities or structures installed, placed or input in sea area or in a row in waters between sea area and shore for the purposes of marine leisure, tourism, residence, seawater use and others	Marine facilities for tourism, housing and restaurant of 100m <sup>2</sup> and more of total floor area	2-Ga
	Water intake and outlet facilities of 600mm and more in diameter of pipe	2-Na
	Fishing spots at play	2-Da
	Other marine facilities	2-Ra
3. Other facilities or structures installed, placed or input in sea area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for national oceanographic observation	3-Ga

### 3. 해양시설 신고 현황

#### 3.1 해양시설의 수

2008년 및 2009년 지방해양항만청별 해양시설 신고 현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12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s in Korea in 2008 and 2009

Year Regional offices	(Unit: Number of facilities)								Total	
	2008			2009				Total		
Report	Dupliccate	New (net)	Report	Dupliccate	Chang-ing	Closing	New (net)	Incr-ement	End of 2009	
BS(부산)	55	0	55	68	66	0	0	2	2	57
IC(인천)	35	0	35	13	0	2	0	11	11	46
YS(여수)	84	26	58	7	0	6	0	1	1	59
MS(마산)	121	0	121	129	113	5	4	7	3	124
US(울산)	44	0	44	49	25	18	1	5	4	48
DH(동해)	47	0	47	7	0	0	0	7	7	54
GS(군산)	45	0	45	5	0	2	0	3	3	48
MP(목포)	48	0	48	21	0	0	0	21	21	69
PH(포항)	67	0	67	16	12	0	1	3	2	69
PT(평택)	35	16	19	45	39	2	0	4	4	23
DS(대산)	29	0	29	6	0	1	1	4	3	32
JJ(제주)	43	0	43	9	1	4	2	2	0	43
Total	653	42	611	375	256	40	9	70	61	672

2008년에는 총 653건(상반기 312건, 하반기 341건)의 해양시설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중복하여 신청한 42건(여수청 26건 및 평택청 16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총 611건의 해양시설을 최초로 신고하였다. 총 611건의 해양시설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마산청(121건), 포항청(67건), 여수청(58건), 부산청(55건), 목포청(48건), 동해청(47건), 군산청(45건), 울산청(44건), 제주청(43건), 인천청(35건), 대산청(29건), 평택청(1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신고 건수로는 마산청이 1위, 포항청이 2위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총 375건(상반기 139건, 하반기 236건)의 해양시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의 종류를 보면 중복 신고(256건), 변경 신고(40건), 폐업 신고(9건) 및 신규 신고(70건)로 나타났다. 2008년에 신고한 시설을 2009년에 중복하여 신고한 건수는 총 256건으로 마산청(113건), 부산청(66건), 평택청(39건), 울산청(25건), 포항청(12건), 제주청(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청, 여수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대산청은 중복하여 신청한 건수가 전혀 없었다. 중복하여 신고한 지방청과 그렇지 않은 지방청이 절반씩 혼재하는 이유는 해양시설 신고 업무 처리지침(2008년 4월 14일 시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처리지침의 미흡(또는 불명확)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 신고 해양시설 중에서 신고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9년에 변경 신고를 한 시설은 총 40건으로 울산청(18건), 여수청(6건), 마산청(5건), 제주청(4건), 인천청(2건), 군산청(2건),

평택청(2건), 대산청(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신고 해양시설 중에서 2009년에 폐업을 신고한 시설은 총 9건으로 마산청(4건), 제주청(2건), 울산청(1건), 포항청(1건), 대산청(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신규로 신고한 해양시설은 총 70건으로 목포청(21건), 인천청(11건), 마산청(7건), 동해청(7건), 울산청(5건), 평택청(4건), 대산청(4건), 군산청(3건), 포항청(3건), 부산청(2건), 제주청(2건), 여수청(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70개소의 신규 시설과 9개소의 폐업 시설을 고려하면 2008년에 비하여 61개소의 해양시설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 말 현재, 국내의 해양시설은 총 672개소(2008년 신고한 611개소 및 2009년 증가한 61개소)로 전국의 동·서·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추정한 전국 해양시설 약 2,500개소의 26.9%에 해당하는 신고 숫자이다.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직 신고하지 않은 신고대상 시설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3.2 지방해양항만청별 현황

2009년 말 현재, 해양시설 수의 지방해양항만청별 현황과 지역별 백분율 분포를 Fig. 1과 Fig. 2에 각각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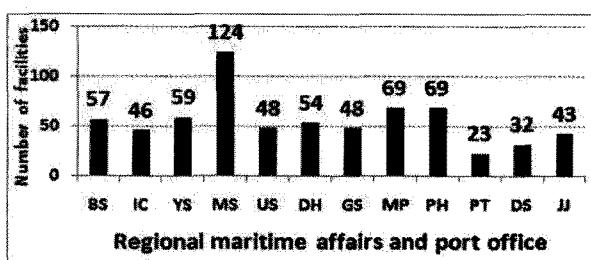


Fig. 1. Number of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12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s of MLTM in Korea at the end of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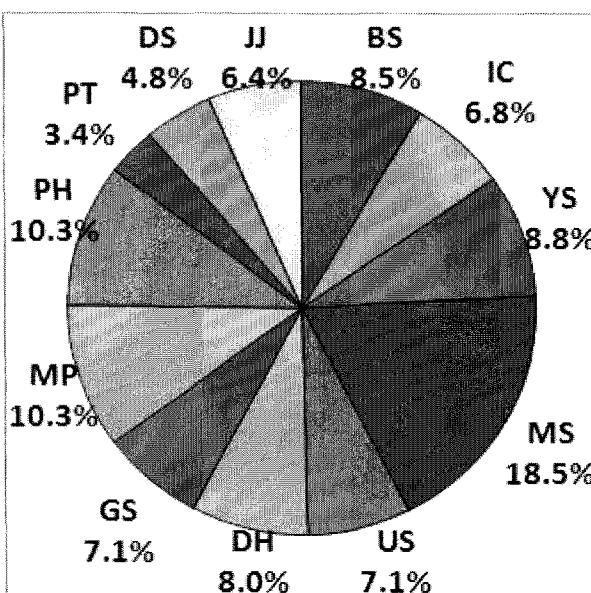


Fig. 2. Regional percentage of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12 Regional Offices of MLTM in Korea at the end of 2009.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 신고현황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마산청(MS) 124개소, 목포청(MP) 69개소, 포항청(PH) 69개소, 여수청(YS) 59개소, 부산청(BS) 57개소, 동해청(DH) 54개소, 울산청(US) 48개소, 군산청(GS) 48개소, 인천청(IC) 46개소, 제주청(JJ) 43개소, 대산청(DS) 32개소, 평택청(PT) 2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 672개소의 약 18.5%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청별 신고건수의 최고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마산·창원, 진해, 통영, 거제, 사천, 고성, 하동, 남해 등의 마산청 관할지역에 해양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각각 전국의 약 10.3%를 차지하여 공동 2위였고, 여수청 및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이 각각 59개소와 57개소로 전국의 약 8.8% 및 약 8.5%를 차지하여 4위와 5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해양시설의 4분의 1이 상이 부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어 있다.

### 3.3 시설 종류별 현황

2008년 및 2009년 해양시설의 종류별 신고 현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ype and number of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12 Regional Offices of MLTM in Korea in 2008 and 2009

Type	Abbr.	2008	2009	Total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1-Ga	307	13	320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1-Na	11	0	11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1-Da	164	14	178
Cargo handling facilities	1-Ra	7	0	7
Waste storage facilities	1-Ma	11	1	12
Marine facilities for tourism, housing and restaurant	2-Ga	0	0	0
Water intake and outlet facilities	2-Na	60	28	88
Fishing spots at play	2-Da	35	2	37
Other marine facilities	2-Ra	10	3	13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3-Ga	6	0	6
	Total	611	61	672

2008년에 신고한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은 총 500개소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1-Ga) 307개소, 오염물질 저장시설(1-Na) 11개소, 선박건조·수리·해체시설(1-Da) 164개소, 하역시설(1-Ra) 7개소,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1-Ma) 11개소였다. [별표 1] 제2호의 해양시설은 총 105개소로 취수·배수시설(2-Na) 60개소, 유어장(2-Da) 35개소, 기타 시설(2-Ra) 10개소였다. [별표 1] 제3호의 해양시설은 종합해양과학기지(3-Ga)로 6개소였다.

2009년에 신고한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은 총 28개소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1-Ga) 13개소, 선박건조·수리·해체시설(1-Da) 14개소,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1-Ma) 1개소였다. [별표 1] 제2호의 해양시설은 총 33개소로 취수·배수시설(2-Na) 28개소, 유어장(2-Da) 2개소, 기타 시설(2-Ra) 3개소였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 종류별 신고 현황과 분포율을 Fig. 3과 Fig. 4에 각각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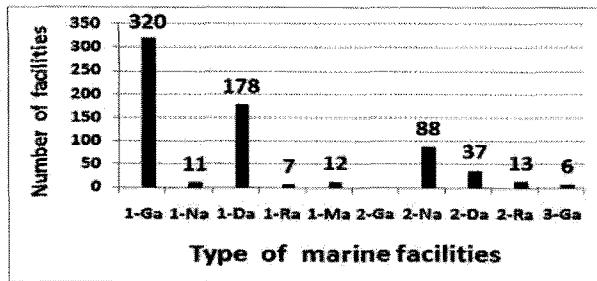


Fig. 3. Number of marine facilities based on type of facilities at the end of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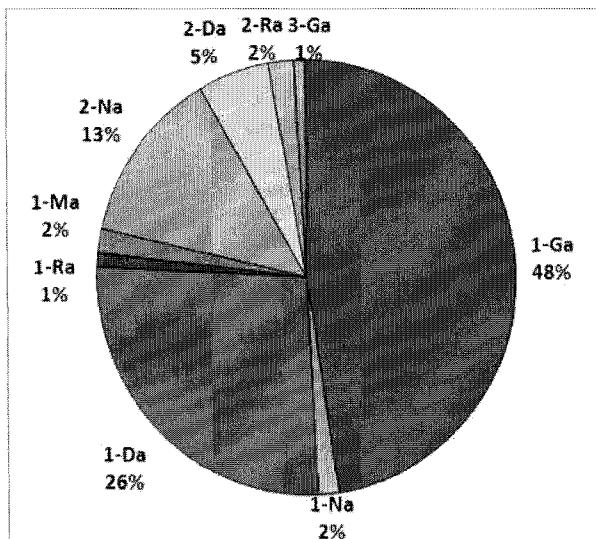


Fig. 4. Percentage of various marine facilities based on type of facilities at the end of 2009.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별표 1] 제1호의 시설)은 528개소로 시설 종류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1-Ga)은 320개소로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였고, ② 오염물질저장시설(1-Na)은 11개소로서 전국의 1.6%를, ③ 선박건조·수리·해체시설(1-Da)은 178개소로서 전국의 26.5%를, ④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1-Ra)은 7개소로서 전국의 1.0%를, 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1-Ma)은 12개소로서 전국의 1.8%를 차지하였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여수청(1건)과 울산청(5건)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1-Ma)을 오염물질저장시설(1-Na)

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양시설 신고업무 처리지침(2008년 4월 14일 시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처리지침의 오류나 미흡 때문으로 보인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별표 1] 제2호의 시설)은 138개소로 시설 종류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2-Ga)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②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2-Na)은 88개소로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13.1%를 차지하였으며, ③ 유어장(2-Da)은 37개소로서 전국의 5.5%를, ④ 그 밖의 시설(2-Ra)은 13개소로서 전국의 1.9%를 차지하였다.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3-Ga)는 6개소로서 전국의 0.9%를 차지하였다.

#### 4. 관리 방안

##### 4.1 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최근 2년간(2008년 및 2009년)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전국의 해양시설은 총 672개소로 국토해양부 추정치의 26.9%에 불과 하므로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신고대상 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

##### 4.2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해양시설의 현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양시설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해양시설의 신고 및 관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4.3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2008년에 신고한 해양시설을 2009년에 중복하여 신고하거나 상반기에 신고한 해양시설을 다시 하반기에 신고한 지방청과 그렇지 않은 지방청이 절반씩 혼재하였으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을 오염물질저장시설로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지방청들이 있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해양시설 신고업무 처리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처리지침의 미흡이나 불명확 때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양시설 신고업무 처리지침을 보완하거나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가 정확히 시행되도록 개선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 4.4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해양시설 신고제도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사후단속보다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해양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시설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산업 활동의 터전이 되는 해양을 보전하고 가꾸는 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식과 함께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고의무 및 법령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5. 결 론

2008년 및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해양시설 신고실적을 분석·정리하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에 해양시설 총 611개소를 최초로 신고하였고, 2009년에는 70개소의 신규 시설과 9개소의 폐업 시설을 신고하여 61개소의 해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국내 해양시설은 총 672개소로 전국의 동·서·남해 해안에 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09년 말 현재 해양시설의 지방청별(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마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청별 신고건수 중에서 최고를 나타내었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3) 2009년 말 현재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별표 1] 제1호의 시설)의 신고 현황은 총 528개소로 전국의 78.6%를 차지하였으며,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체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1위였고, ②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③ 선박건조·수리·해체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④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점유하였다.

(4) 2009년 말 현재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별표 1] 제2호의 시설)의 신고 현황은 총 138개소로 전국의 20.5%를 차지하였으며,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①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②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은 88개소로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13.1%를, ③ 유어장은 37개소로 전체의 5.5%를, ④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전체의 1.9%를 차지하였다.

(5) 2009년 말 현재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6개소로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0.9%를 차지하였다.

(6)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①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②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③ 신고업무 처리

의 개선 및 보완, ④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미신고 해양시설의 추가 신고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실적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해양시설의 종류별 및 규모별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수(2009a),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교육의 메카로 발전해야,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2009 Spring, 해양환경관리공단, pp. 44-49.
- [2] 김광수(2009b), 해양환경관리법, 목포해양대학교, p. 233.
- [3] 김광수(2009c),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5권제2호, pp. 105-110.
- [4] 해양환경관리공단(2008), 해양환경 교육과정 개발, 최종보고서, pp. 1-104.
- [5] CSLC(2010), California State Lands Commission, <http://www.slc.ca.gov/>

---

원고접수일 : 2010년 05월 26일

원고수정일 : 2010년 06월 25일 (1차)

원고수정일 : 2010년 08월 08일 (2차)

게재확정일 : 2010년 09월 24일